

# 문신사·반영구화장사법안 심사보고서

2025. 9.  
보건복지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4년 11월 26일 윤상현의원 등 10인

나. 회부일자: 2024년 11월 27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제420회 국회(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1. 14.) 상정, 제안설명, 검토보고, 대체토론, 소위원회

제421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1. 22.) 상정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1차 법안심사제2소위원회(2025. 8. 20.) 상정, 의결(대안반영폐기)

제428회 국회(임시회) 제2차 보건복지위원회(2025. 8. 27.) 상정, 소위심사보고, 의결(대안반영폐기)

## 2. 제안설명의 요지

(윤상현의원)

우리나라는 문신 및 반영구화장에 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고, 1992년 대법원은 문신시술행위는 의료행위에 해당하고 보건위생에 위협이

발생할 염려가 있다고 판단하며 「의료법」 제27조에 따라 비의료인의 문신시술행위를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음.

하지만 2022년 8월 청주지법 형사항소1부는 미용 목적의 반영구화장 시술은 무면허 의료행위가 아니라는 판단을 내렸고, 2023년 12월 부산지법(박주영 판사)에서도 문신 시술은 의료행위와 다르고 시술 방식과 염료의 위험 감소, 사회 인식 변화, 대법원 판례 변천 등을 종합하면 눈썹 시술은 의료행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단함.

특히, 문신을 의료행위로 판단했었던 일본도 지난 2020년 우리의 대법원 격인 일본 최고재판소에서 문신은 의료행위가 아닌 것으로 최종 판결함. 이제 문신을 의료행위로 간주하는 국가는 우리나라가 유일함.

이러한 흐름 속에 정부는 지난 2022년 8월부터 규제혁신을 위해 도입한 ‘규제심판회의’를 열어 혁신과제에 ‘비의료인의 반영구화장 시술 허용’을 선정하며 다양한 의견을 논의하였고, 보건복지부는 2024년 3월부터 시작한 ‘문신사 자격시험 및 보수교육 체계 개발’ 연구를 통해 문신사 국가시험 시행을 포함한 관련 정책을 마련할 계획을 하고 있음.

그리고 2024년 11월 보건복지부의 ‘문신 시술 이용자 현황 조사’ 결과보고서에 따르면 문신이나 반영구화장 문신 시술 이용자 1천685명을 대상으로 문신 시술에 대한 인식을 설문한 결과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을 허용해야 한다는 응답이 54.2%에 달하였고, 그 이유로 ‘대부분 비의료인이 문신을 시술하고 있고, 제도화를 통한 관리가 필요하

기 때문'이라는 응답이 52.4%로 나타남.

또한, 문신을 시술받은 장소는 문신 전문숍이라는 응답이 81.0%였고, 병의원에서 시술받은 경우는 1.4%에 불과함. 사실상 문신과 반영구화장 시술은 비의료인의 시술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고, 국민 정서에도 거부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에 문신사 및 반영구화장사에 대한 자격과 업무범위, 위생관리의무와 영업소의 신고 등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체계와 현실의 괴리를 줄이고 이용자의 보건위생과 종사자의 직업의 안정성을 보다 두텁게 보호하고자 함.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정경윤)

문신행위는 「의료법」에 따른 '의료행위'로서 비의료인이 할 수 없다는 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현행 「의료법」에는 문신이나 반영구화장이 '의료행위'에 포함되는지에 대해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같은 법 제27조에서 비의료인은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예외적으로 의료인이 아닌 자 중 간호조무사, 의료유사업자(접골사·침사·구사), 안마사에 한하여 일부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비의료인이 의료행위를 하는 경우 「의료법」 및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받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문신행위에 대하여 대법원은 이를 의료인이 행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의료행위’로 보고 「의료법」, 「보건범죄 단속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 왔음. 헌법재판소 또한 비의료인에 대하여 문신 기술을 포함한 의료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한 의료법 제27조제1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지 아니하므로, 의료인 면허 없이 문신 기술을 하려는 사람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합헌결정을 하였음(헌법재판소 2022. 3. 31. 선고 2017헌마1343 등 결정).

한편, 우리나라는 기술자 35만 명(문신 5만 명, 반영구화장 30만 명), 이용자 1,300만명 이상으로 추정될 만큼, 문신(반영구화장 포함)이 대중화되어 가고 있고, 사회적 수용성도 점차 높아지는 추세에 있음. 보건복지부의 ‘문신 기술 이용자 현황조사’(2023. 11.) 결과를 보더라도, 응답자 1,685명(남성 285명, 여성 1,400명) 중 문신이용자는 500명, 반영구화장 이용자는 1,444명, 문신·반영구화장 모두 이용자는 259명에 이르며, 비의료인에 대한 허용여부에 대해서도 절반 이상이 수용하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음.

참고로 미국, 프랑스, 영국 등의 국가에서도 문신 제도를 별도로 운영하고 있기도 함.

하지만 상기한 바,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경우 문신 등 기술행위를 의료행위로 보고 있어 비의료인에 의한 기술은 불법인 상황이고, 문신행위에 대한 관리·감독의 법적 근거도 마련되어 있지 않아 문신 등 시

술로 인한 보건위생상의 안전과 문제 상황에 대한 대응도 취약할 수 밖에 없는 실정임. 이에 따라 의료인이 아닌 시술자의 문신 등 시술은 「의료법」 등에 따라 처벌되거나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이용자는 문신에 따른 부작용이 발생하는 경우 피해를 구제받기도 어려운 실정임.

제정안과 같이 문신 등에 대한 독립된 관리 체계를 제정함으로써 대부분 의료 목적이 아닌 미용이나 예술적 목적에서 시술되고 있는 사회 현실과 법 제도의 간격을 해소할 필요성과 함께, 이용자 건강을 위한 위생 여건 뿐만 아니라 종사자의 직업 안정성도 확보할 필요성이 있겠음.

관련하여 국가인권위원회(상임위원회)에서도 2022. 2. 17. 국회의장에 대한 의견표명을 통하여 ‘반영구화장을 포함한 문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달라진 데 반해 여전히 비의료인의 문신 시술 행위가 형사 처벌 대상이 되는 현행법의 태도는 문신시술자의 직업선택의 자유와 피시술자의 개성 발현의 자유를 침해하므로, 문신 시술에 관한 별도의 자격 제도를 마련하는 조속한 입법 논의와 검토’를 촉구한 바 있고,

하급심에서도 ‘의료행위’에 대하여 ‘의료인이 하지 아니하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인지’ 여부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질병의 예방·진찰과 치료를 위한 행위’라는 본래의 의미도 고려하여야 함을 이유로 반영구화장 시술은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본 사례(청주지방법원 2022. 10. 19. 선고2020고정825 판결,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3. 12. 20. 선고 2022고정569 판결)가 있음.

다만, 업종 세분화(문신사 vs 문신사·반영구화장사), 자격 요건 등 주요 사항에 관한 쟁점과 함께, 그 외 「공중위생관리법」 개정을 통해 제도화가 필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기존 영업자 자격 취득 유예 관련하여서도 다양한 의견이 제시될 수 있는바, 이러한 의견도 충분히 청취하면서 조율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임.

#### 4. 대체토론의 요지

없음

#### 5. 소위원회 심사내용

(소위원장 이수진)

제정안의 내용을 반영하여 우리 위원회의 대안으로 제안하고 제정안은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기로 의결

#### 6. 찬반토론의 요지

없음

#### 7. 심사결과

대안반영 폐기